

공 고

● 대구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9.

대구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처분대상 : 패스텔레콤 11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사전통지 명단 참고)
2. 처분내용 : 시정명령(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또는 휴·폐업 신고 이행)
3. 위반내용 : 신고사항(사무소 주소,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거나 사업을 휴·폐업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92조(시정명령),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5. 의견제출기한 : 2026. 7. 17.(금)
6. 의견제출처
가. (우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만촌동) 대구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나. (전화) 053-749-2818 (팩스) 053-749-2929 (전자우편) iamkey@korea.kr
7. 유의사항
가.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 제출서)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청에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명단

연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위반내용	처분 예정
1	1710	패스텔레콤	윤○민	변경 또는 휴·폐업 미신고	시정명령
2	1626	행복주단한복대여점	임○의	변경 또는 휴·폐업 미신고	시정명령
3	1524	청도감농장	권○옥	변경 또는 휴·폐업 미신고	시정명령

연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위반내용	처분 예정
4	1376	지엠티브이	임O구	변경 또는 휴·폐업 미신고	시정명령
5	1261	비비드톤	전O예	변경 또는 휴·폐업 미신고	시정명령
6	1239	삼도봉산삼	박O선	변경 또는 휴·폐업 미신고	시정명령
7	1185	의성마늘고추직판장	박O환	변경 또는 휴·폐업 미신고	시정명령
8	956	(주)비트로시스넷	박O길	변경 또는 휴·폐업 미신고	시정명령
9	942	영양태양농장	김O란	변경 또는 휴·폐업 미신고	시정명령
10	841	안동인터넷뉴스	피O찬	변경 또는 휴·폐업 미신고	시정명령
11	668	라이브론	박O훈	변경 또는 휴·폐업 미신고	시정명령